##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한지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885

발의연월일: 2024. 11. 26.

발 의 자: 한지아·김형동·조경태

임이자 • 서일준 • 이종배

김소희 • 박성민 • 진종오

서명옥 • 우재준 • 김승수

의원(12인)

## 제안이유

시체 해부 참판 등 시체 이용에 대한 규정 및 관리체계가 미비한 상태로 시체 이용에 있어 사전심의 의무화 등 관리·감독 방안 마련과 영리 목적 활용 등 부적절한 목적으로 시체를 이용하거나 알선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, 의과대학에서는 기증된 시체를이용하여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을 교육하고 있으나, 의과대학별로 기증 편차가 존재하여 교육 환경이 상이한 상황으로 기증자 및 유족이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에게 교육 목적으로 「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관한 법률」 제9조의4에 따라 허가된 기관에 타 의과대학으로 기증한시체를 제공함에 동의한 경우 그 의사에 따라 타 의과대학으로 기증한시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# 주요내용

- 가.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 시체해부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도록 하고, 시체 해부는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(안 제2 조의2 및 제9조제2항 신설).
- 나. 유족의 범위 및 동의 우선순위를 규정함(안 제4조의2 신설).
- 다. 연구 목적으로 연구자에게 시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(안 제9조 의4제1항).
- 라. 시체의 제공에 있어 인체의 구조 연구인 경우에는 시체해부심의위 원회의 심의를,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인 경우에는 기관위원회 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(안 제9조의6제1항).
- 마. 시체표본의 이용은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의무화 함 (안 제16조제3항 신설).
- 바. 시체를 수집·보존하는 의과대학 및 종합병원에 대하여 시체의 수집 및 이용 현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(안 제1 8조의2제2항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조 중 "치과의학"을 "치의학"으로 한다.

제2장의 제목 중 "해부"를 "해부 등"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"을 "제2조의2에 따른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"의과대학(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해부학 · 병리학 또는 법의학을 전공한 교수 · 부교수 또는 조교수가"를 "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사람이"로, "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"를 "의학 · 해부학 · 병리학 · 법의학을 전공한 사람 또는 전공하는 학생으로"로 하며,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가. 의과대학(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해부학·병리학 또는 법의학을 전공한 교수·부교수 또는 조교수나. 의과대학의 해부학·병리학 또는 법의학 교수·부교수 또는 조교수

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2(시체해부심의위원회) ①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은 의학 의 교육 또는 의학·의생명과학의 연구 등의 목적으로 시체를 이용하

- 기 위해 시체해부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4조제1항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나.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유족의 범위 및 동의 순위) 이 법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동의 우선순위는 등에 관한 사항은 「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6 호 및 제12조제1항제2호를 준용한다.

제3장의 제목 "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 등"을 "시체등을 이용한 연구 등"으로 한다.

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시체 해부는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. 다만, 의과대학의 통상적인 교육과 관련한 시체 해부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9조의3의 제목 "(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에 대한 유족의 동의)"를 "(시체등을 이용한 연구에 대한 유족의 동의)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시체의 일부를 이용하여"를 "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(이하 "시체등"이라 한다)를 이용하여"로 하며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,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"시체의 일부를"을 각각 "시체등

을"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"시체의 일부를"을 "시체등을"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"시체의 일부의"를 "시체등의"로, "시체의 일부를"을 "시체등을"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"시체의 일부"를 각각 "시체등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"시체의 일부를"을 각각 "시체등을"로 한다.

제9조의4의 제목 "(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)"을 "(연구를 위한 시체등의 제공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시체의 일부를"을 "시체등을"으로 하며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인체의 구조 연구를 위한 시체등의 제공은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교육을 목적으로 의과대학에만 제공하여야 한다.

제9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시체의 일부"를 "시체등"으로 한다.

제9조의6의 제목 "(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절차 및 방법)"을 "(연구를 위한 시체등의 제공 절차 및 방법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중 "시체의 일부를"을 "시체등을"로, "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"를 "인체의 구조 연구인 경우에는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,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인 경우에는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"로 하며, 같은 조제2항 본문 중 "시체의 일부를"을 "시체등을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시체의 일부의"를 "시체등의"로, "시체의 일부를"을 "시체등을"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중 "시체의 일부의 제공 절차"를 "시체등의 제공 절차"로,

"시체의 일부의 제공에"를 "시체등의 제공에"로 한다.

제9조의7의 제목 "(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의 준수사항)"을 "(시체등을 이용한 연구의 준수사항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시체의 일부를"을 각각 "시체등을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"시체의 일부를"을 각각 "시체등을"으로 "시체의 일부의"를 "시체등의"로 하고, 같은 항단서 중 "시체의 일부를"을 "시체등을"로 하며, 제3항 중 "시체의 일부를"을 "시체등을"로 하며, 제3항 중 "시체의 일부를"을 "시체등을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시체의 일부를"을 각각 "시체등을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"시체의 일부"를 각각 "시체등"으로 한다.

제9조의8의 제목 "(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관리)"를 "(연구를 위한 시체등의 제공 관리)"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시체의일부"를 "시체등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"시체의 일부를"을 "시체등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"시체의 일부의"를 "시체등의"로 하며, 같은 조 제5호 중 "시체의 일부"를 "시체등"으로 한다.

제9조의9의 제목 "(시체의 일부의 제공을 위한 지원)"을 "(시체등의 제공을 위한 지원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"시체의 일부를"을 "시체등을"로, "행정적·기술적"을 "행정적·재정적"으로 한다.

제10조제2항 및 제3항 중 "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"을 각각 "시체등을" 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취득"을 "취득·이용"으로 한다.

제16조제1항 중 "의과대학의 장, 종합병원의 장, 그 밖에 의학·의생명 과학에 관한 연구기관의 장은"을 "의과대학의 장, 종합병원의 장은"으 로, "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"을 "시체등을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시체표본을 이용하는 때에는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의과대학의 통상적인 교육과 관련한 연구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17조제1항 중 "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"을 "시체등을"로, "시체의 일부를"을 "시체등을"로 한다.

제17조의2제1항 중 "국가는"을 "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"으로, "유족("가족" 또는 "유족"은 「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6호를 준용한다)"을 "유족"으로 한다.

제18조의2의 제목 중 "조사"를 "조사 등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시체의 일부를"을 "시체등을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"시체의 일부"를 "시체등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전단 중 "시체의 일부를"을 "시체등을"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"제3항"을 "제4항"으로 한다.

② 시체등을 수집·보존하는 의과대학 및 종합병원은 시체의 수집 및 이용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9조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 "시체의 일부를"을 각각 "시체등을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"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"을 "시체등을"으

로 하며, 같은 조 제5호 중 "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"을 "시체등을 취득·이용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8호 중 "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"을 "시체등을"으로 한다.

제21조제1항제1호 중 "제9조를"을 "제9조제1항을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 4호 중 "제18조의2제4항"을 "제18조의2제5항을"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                    | 개 정 안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1조(목적) 이 법은 사인(死因)의     | 제1조(목적)                    |
| 조사와 병리학적 · 해부학적 연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국민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보건을 향상시키고 의학( <u>치과의</u> | <u>치의학</u> -               |
| <u>학</u> 과 한의학을 포함한다. 이하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같다)의 교육 및 의학·의생명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과학의 연구에 기여하기 위하여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시체(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태아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해부・보존 및 연구에 관한 사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2장 시체의 <u>해부</u>        | 제2장 시체의 <u>해부 등</u>        |
| 제2조(시체의 해부) 시체를 해부       | 제2조(시체의 해부)                |
|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로 한다.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. 시체의 해부에 관하여 상당        | 1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(치과의사를 포함한다. 이하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같다)로서 <u>대통령령으로 정하</u>   | <u>제2조의2에 따른 시</u>         |
| <u>는</u> 사람이 해부하는 경우     | 체해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>받은</u>                  |
| 2. 의과대학(치과대학과 한의과        | 2. <u>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</u> |
| 대학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        | <u>당하는 사람이</u>             |

의 해부학 • 병리학 또는 법의 학을 전공한 교수·부교수 또 는 조교수가 직접 해부하거나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 하 의학·해부학·병리학·법의 여금 자신의 지도하에 해부하 게 하는 경우

<신 설>

<신 설>

3. ~ 6. (생략) <신 설>

학을 전공한 사람 또는 전공 하는 학생으로 -----

가. 의과대학(치과대학과 한 의과대학을 포함한다. 이 하 같다)의 해부학・병리 학 또는 법의학을 전공한 교수・부교수 또는 조교수 나. 의과대학의 해부학 • 병리 학 또는 법의학 교수 • 부

3. ~ 6. (현행과 같음)

교수 또는 조교수

제2조의2(시체해부심의위원회) ①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은 의학의 교육 또는 의학 • 의생명 과학의 연구 등의 목적으로 시 체를 이용하기 위해 시체해부심 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른 시체해부심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- 제4조(시체 해부에 대한 유족의 제4동의) ① 시체를 해부하려면 그 유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- 1. ~ 2. (생략)
  - 3. 2명 이상의 의사가 진료하던 환자가 사망한 경우 진료에 종사하던 의사 전원이 사인 (死因)을 조사하기 위하여 특히 해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또한 그 유족이 있는 곳을 알 수 없어 유족의 동의 여부가 판명될 때까지 기다려서는 해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. 이 경우 다음 각 목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해부하여야 한다.

가. (생략)

- 나. 의과대학의 해부학·병리 학 또는 법의학을 전공한 교수·부교수 또는 조교수
- 4. (생략)
- ②・③ (생 략)

<신 설>

| 4조(시체 해무에 대한 유족의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동의) ①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·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,                        |
| 1. ~ 2. (현행과 같음)         |
| 3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u>.</u>                 |
| 가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|
| 나.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        |
| 에 해당하는 사람                |
| <u>게 예 ö 에 ㄴ / [ [ ]</u> |
| . (-1-11 ) (-1-11)       |
| 4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|
| ②·③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|
| 114조의2(유졸의 범위 및 동의 수     |

<u>제3장</u>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 <u>등</u>

제9조(인체의 구조 연구를 위한 해부)(생 략)

<신 설>

제9조의3(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에 대한 유족의 동의) ① 시체의 일부를 이용하여 연구하 려는 자 또는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시체의 일부 를 수집・보존하여 연구 목적으 로 제공하려는 기관은 그 유족 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위) 이 법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동의 우선순위는 등에 관한 사항은 「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6호 및 제12조제 1항제2호를 준용한다.

제3장 <u>시체등을 이용한 연구 등</u>

제9조(인체의 구조 연구를 위한 해부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 과 같음)

② 제1항에 따른 시체 해부는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의과대학의 통상적인 교육과 관련한 시체 해부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.

- 1. 본인의 <u>시체의 일부를</u> 이용
   한 연구에 동의한다는 「민 법」 제1060조에 따른 유언이 있을 때
- 2. 본인의 <u>시체의 일부를</u> 이용한 연구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, 성명 및 연월일을 자서· 날인한 문서에 의한 동의가
- ② 제1항에 따른 동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, 다음 각 호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
   의 목적
- 2. (생략)
- 3. <u>시체의 일부의</u> 제공에 관한 사항(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이 <u>시체의</u> 일부를 제공하려는 경우에 한 정한다)
- 4. <u>시체의 일부</u>의 보존, 관리 및 폐기에 관한 사항
- 5. 동의 철회의 방법, 동의 철회시 시체의 일부의 처리 방법,동의한 사람의 권리 및 그 밖

| 1 <u>시체등을</u>  |
|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
| 2 <u>시체등을</u>  |
|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
| ②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
| 1. <u>시체등을</u> |
|                |
| 2. (현행과 같음)    |
| 3. <u>시체등의</u> |
|                |
| <u>시체등</u>     |
| <u>으</u>       |
|                |
| 4. <u>시체등</u>  |
|                |
| 5              |
| <u>시체등</u>     |
|                |

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③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이 제1항의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 기관으로부터 시체의 일부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연구하려는 자도 제1항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
④ 시체의 일부를 이용하여 연구하려는 자 또는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은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기 전에 유족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.

제9조의4(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 기본의 제공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·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어 보건복 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기관은 시체의 일부를 수집·보존하여 연구 목적으로 연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. <단서 신설>

| ③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
| 시체등을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
| ·                 |
| ④ 시체등을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
| 제9조의4(연구를 위한 시체등의 |
| 제공) ①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
| 시체등을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
| <u>다만, 인체의 구조</u> |
|                   |
| 연구를 위한 시체등의 제공은   |
|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교육을  |
| 목적으로 의과대학에만 제공하   |
|                   |

- 1. 2. (생략)
- ②·③ (생 략)
- 제9조의5(허가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체의 일부의 제공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.
  - 1. ~ 6. (생략)
  - ② (생략)
- 제9조의6(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절차 및 방법) ①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의 장이 시체의 일부를 제공하려는 경우 이를 제공받아연구하려는 연구자로부터 이용계획서를 제출받아 그 내용을검토한 후 기관위원회의 심의를거쳐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한다.

| 여야 한다.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|
| 1.•2. (현행과 같음)    |
| ②・③ (현행과 같음)      |
| 제9조의5(허가의 취소와 업무의 |
| 정지) ①             |
| 0 1 <i>7</i>      |
|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
| 3.3-4             |
| <u>시체등</u>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
| 1. ~ 6. (현행과 같음)  |
| ② (현행과 같음)        |
| 제9조의6(연구를 위한 시체등의 |
| 제공 절차 및 방법) ①     |
|                   |
| 시체등을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
| 이체이 구즈 여구이        |
| <u>인체의 구조 연구인</u> |
| 경우에는 시체해부심의위원회    |
| 의 심의를, 시체의 일부를 이용 |
| 한 연구인 경우에는 기관위원회  |

- ②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의 장이 <u>시체의 일</u>부를 제공할 때에는 익명화하여야 한다. 다만, 식별정보를 포함하는 것에 대하여 본인 또는 유족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③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의 장은 <u>시체의 일</u>부의 보존 및 제공에 소요된 경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<u>시체의 일부를</u>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연구하려는 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.
- ④ 제1항에 따른 <u>시체의 일부의</u> 제공 절차 및 방법, 제2항에 따른 익명화 방법, 제3항에 따른 경비의 산출 및 그 밖에 <u>시체의 일부의 제공에</u>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- 제9조의7(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저연구의 준수사항) ① 제9조의4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<u>시체의</u>일부를 이용하여 연구하는 자는

| <u>의 심의를 거쳐</u>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시체등을 -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u>시체등의</u> -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시체등을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④ 시체등의 제공                   |
| <br>절차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u>시체등</u>                  |
| 의 제공에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ll9조의7 <u>(시체등을 이용한 연구의</u> |
| 준수사항) ①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시체등을                        |
| <u> </u>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- 시체의 일부를 목적 외로 이용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 ·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②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의 장 및 시체의 일부를 이용하여 연구하는 자는 제9조의3에 따른 동의를 받은 시체의 일부의 보존기간이 지나면 그 시체의 일부를 폐기하여야 한다. 다만, 시체의 일부를 보존하는 중에 그 유족이 보존기간의 변경이나 폐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에 따라야한다.
- ③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의 장 및 <u>시체의</u>일부를 이용하여 연구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<u>시체의 일부의</u> 폐기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・보관하여야 한다.
- ④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의 장 및 <u>시체의</u>일부를 이용하여 연구하는 자는부득이한 사정으로 <u>시체의 일부</u>를 보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

| 시체등을        |
|-------------|
|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
| 2           |
| 시체등을        |
|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
| 시체등의        |
| <u>시체등을</u> |
| <u>시체등을</u> |
|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
| ③           |
| <u>시체등을</u> |
|             |
| <u>시체등의</u> |
|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
| <b>4</b>    |
| <u>시체등을</u> |
| 이용하여        |
| <u>시체등을</u> |
|             |

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체의 일부를 폐기하거나 다른 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.

- ⑤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체의 일부에 대한 익명화 방안이 포함된 식별정보 보호 지침을 마련하고, 식별정보 관리 및보안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.
- ⑥ <u>시체의 일부</u>의 보존, 폐기, 처리 또는 이관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- 제9조의8(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관리) 보건복지부장 관은 시체의 일부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있도록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한다.
  - 1. · 2. (생략)
  - 3. 제9조의6에 따라 <u>시체의 일</u> 부를 제공하는 절차의 표준 마련
  - 4. 시체의 일부의 제공을 위한

| <u>시체등을</u>       |
|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|
| ⑤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
| <u>\]</u>         |
| 제등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
| <u>.</u>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
| ⑥ <u>시체등</u>      |
|                   |
| ,                 |
| 제9조의8(연구를 위한 시체등의 |
| 제공 관리)            |
| <u>시체등</u>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
| ,                 |
| 1. • 2. (현행과 같음)  |
| 3 시체등을 -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
| 4. 시체등의           |

정책·제도의 조사·연구 및 관련 통계의 조사·분석

- 5. 그 밖에 <u>시체의 일부</u>의 제공 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
- 제9조의9(시체의 일부의 제공을 위한 지원)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이 시체의 일부를 보존 및 제공하는 데 필요한행정적·기술적 지원을 할 수있다.

제10조(시체의 관리) ① (생 략)

- ②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로부터 필요한 부분을 꺼내는 자는 그 <u>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</u> 이법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③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제공된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, 그 밖의반대급부를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아니 된다.

| 5 <u>시체능</u>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
| 제9조의9(시체등의 제공을 위한   |
| 지원)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
| 시체등을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
| 행정적·재정적             |
| <del></del>         |
| 제10조(시체의 관리) ① (현행과 |
| 같음)                 |
| ②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
| 시체등을                |
| <u>기계 6 원</u>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
| <br>©               |
| 3                   |
| <u>시체등을</u>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
| <u>취득·이</u>         |
| <u>8</u>            |
| ·.                  |

#### ④ (생략)

제16조(시체표본 보존에 대한 유족의 동의) ① 의과대학의 장, 종합병원의 장, 그 밖에 의학·의생명과학에 관한 연구기관의 장은 의학의 교육 또는 의학·의생명과학의 연구를 위하여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② (생략)

<신 설>

제17조(시체에 대한 예의) ① 시체를 해부하거나 <u>시체의 전부</u>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는 사람 및 <u>시체의 일부를</u> 이용하여 연구하거나 이를 수집·보존하여 연구 목적으로 제공하는 사람은 시체를 취급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.

② (생략)

| ④ (현행과 같음)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|
| 제16조(시체표본 보존에 대한 유 |
| 족의 동의) ① 의과대학의 장,  |
| 종합병원의 장은           |
| <u>опостос</u>     |
|                    |
| ٨]                 |
| 지등을                |
| <del></del>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
| ② (현행과 같음)         |
| ③ 제1항에 따른 시체표본을 이  |
| 용하는 때에는 시체해부심의위    |
| 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  |
| 만, 의과대학의 통상적인 교육   |
| 과 관련한 연구는 심의를 거치   |
| 지 아니할 수 있다.        |
| 제17조(시체에 대한 예의) ①  |
| <u>시체등을</u>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
| <u>시체등을</u>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7조의2(시체 해부 동의자 등에 대한 예우) ① 국가는 시체 해 대한 예우) ① 국가나 지방자치 부에 동의한 사람 및 그 가족, 시체 해부를 승낙한 유족("가 존" 또는 "유족"은 「장기등 이 식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6호를 준용한다)에 대하여 국가의 의 학발전을 위한 헌신성을 고려하 여 적절한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18조의2(보고와 <u>조사</u>) ① 보건 복지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체를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고 시체에 대한 예의를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<u>시체의 일부를</u> 이용하 여 연구하는 자에게 보건복지부 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의 시행에 필요한 보고 또는 자 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.

<신 설>

| 대한 예우) ① <u>국가나 지방자치</u>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단체는                        |
| <u>유족</u>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②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|
| 제18조의2(보고와 <u>조사 등</u> ) ①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시체드으                       |
| <u>시체등을</u>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·<br>② 시체등을 수집·보존하는 의      |
| 과대학 및 종합병원은 시체의            |
| 수집 및 이용 현황 등에 관한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체가 훼손되거나 시체에 대한 예의가 지켜지지 못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시체의일부의 제공 또는 연구의 중단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이행 또는 위반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9조의4제 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 및 시체의 일부를 이용하여 연 구하는 자가 소속된 기관 등에 출입하여 그 시설 또는 장비, 관 계 장부나 서류 및 그 밖의 물 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 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, 시험 에 필요한 시료(試料)를 최소분 량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

| 사료들 보건복시부렁으로 성하  |
|------------------|
| 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보건 |
|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 |
| <u>다.</u>        |
| <u>③</u>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
| <u>시체등</u>       |
|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
| <u>.</u>         |
| <u>4</u>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
| <u>시체등을</u>      |
|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

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.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⑤ -----제4항-----에 따른 명령 · 검사 · 질문 등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 면 이에 따라야 한다. 제19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제19조(벌칙) ------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1. ~ 3. (생략) 1. ~ 3. (현행과 같음) 3의2. 제9조의3제1항 및 제2항 3의2. -----을 위반하여 서면동의 없이 시체의 일부를 이용하여 연구 <u>시체등을</u> --------- <u>시체등을</u>-----하거나 시체의 일부를 수집 • 보존하여 제공한 자 3의3.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허 3의3. -----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체의 ----- 시체등 일부를 제공한 자 을 -----3의4. 제9조의6제2항을 위반하 3의4. -----여 익명화하지 아니하고 시체 의 일부를 제공한 자 등을 -----3의5. -----3의5. 제9조의7제1항을 위반하 여 시체의 일부를 목적 외로 -- 시체등을 -----이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

폐기 · 손상한 자

| 3의6. 제9조의7제2항을 위반하        | 3의6              |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여 보존기간이 지난 <u>시체의</u>     |                  | <u>시체등</u> |
| <u>일부를</u> 폐기하지 아니하거나     | <u>으</u>         |            |
| 유족이 보존기간의 변경이나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
| 폐기를 요청하였음에도 그 요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
| 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
| 3의7. 제9조의7제4항을 위반하        | 3의7              |            |
| 여 <u>시체의 일부를</u> 폐기하지     | <u>시체등을</u>      |            |
| 아니하거나 다른 기관에 이관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
| 하지 아니한 자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
| 4.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<u>시</u> | 4                | 시          |
| 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           | <u>체등을</u>       |            |
| 에게 양도한 자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
| 5.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<u>시</u> | 5                | 시          |
| 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           | <u>체등을 취득·이용</u> |            |
| 하거나 양도한 자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
| 6. • 7. (생 략)             | 6. • 7. (현행과 같음) |            |
| 8.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        | 8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
| 의를 받지 아니하고 <u>시체의</u>     |                  | <u>시체등</u> |
|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           | 을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
| 보존한 자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
| 제21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      | 제21조(과태료) ①      |            |
|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
|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
|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
| 1. 제9조를 위반하여 의과대학         | 1. 제9조제1항을       |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

| 이 아닌 곳에서 시체를 해부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한자.                | <u>.</u>              |
| 2.・3. (생 략)        | 2.·3. (현행과 같음)        |
| 4. 제1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| 4. <u>제18</u> 조의2제5항을 |
|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ㆍ검사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·질문 등에 따르지 아니한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자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② (생 략)            | ②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|